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
사 건 2023머 (2023가단 (본소) 임대차보증금  
2023머 (2023가단 반소) 건물인도  
원고, 반소피고 )  
전주시 )  
소송대리인 변호사 )  
피고, 반소원고 주식회사 )  
용인시 )  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 )  
대표이사 )  
대리인 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결정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23. 12. 31.까지, 원고와 피고 사이에  
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m<sup>2</sup>  
관하여 2018. 3. 체결한 보증금 반환으로 18,000,000원을 지급한다.
2. 원고는 피고에게 2023. 12. 31.까지,  
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m<sup>2</sup>를 인도한다.
3.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동시이행으로 한다.
4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항 기재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 
결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채권·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.

5.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,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.
6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# 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는 원고로부터 . . . . .,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. . . m<sup>2</sup>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,070,000원을 지급하라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10,4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. . . . .,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. . . m<sup>2</sup>를 인도하라.

청 구 원 인

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023. 11. 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박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

##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

사 건 2023머. 임대차보증금 [담당재판부:민사 단독(조정)]  
원 고  
피 고 주식회사

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3. 11. .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으나,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2023. 11. .

이의신청인 : 원고 소송대리인  
변호사

전주지방법원 민사 단독(조정) 귀중

### ◇ 유의 사항 ◇

-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  
(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, 민사조정규칙 제16조제1항).
-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

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           2023가단        (본소) 임대차보증금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3가단        (반소) 건물인도

원고(반소피고)

전주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고(반소원고)

주식회사

용인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(만성동)

(송달영수인 전종필)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

변 론 종 결

2024. 6. .

판 결 선 고

2024. 8. .

### 주 문

-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로부터 14,93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(반소원고)에게 1, 2, 3, 4, 1의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-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㎡를 인도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  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6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 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

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㎡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,070,000원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로부터 10,430,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

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㎡를 인도하라.

### 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